

TEFAP 수혜자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

기관명: _____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지원되므로 다음 사항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 (1) 저희는 종교,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 거부, 종교 활동 참여나 참여 거부를 근거로 귀하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2) 저희는 귀하에게 저희 기관이 주관하는 명시적 종교 활동(예배, 종교 교육 또는 전도와 같은 명백한 종교적 내용을 포함하는 활동 포함)에 출석하거나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활동에 대한 귀하의 참여는 순전히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3) 저희는 사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명시적 종교 활동(예배, 종교 교육 또는 전도와 같은 명백한 종교적 내용을 포함하는 활동)을 연방 재정 지원으로 지원되는 활동과 시간 또는 장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 (4) 귀하께서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나 혜택의 거부를 포함하여 이러한 보호 조항의 위반을 다음 연락처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민권 담당 차관보실, 민권 집행 센터, 프로그램 불만 부서에 연락하거나 서면 불만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or, Center for Civil Rights Enforcement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팩스: (202) 690-7442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 (5) 지역에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연방 자금 지원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시면 **USDA 기아 핫라인**에 연락해 주십시오.
 - 전화: 1-866-3-HUNGRY 또는 1-877-8-HAMBRE 로 전화하여 동부 시간 오전 7 시 – 오후 10 시 사이에 담당자와 통화하십시오.
 - 문자: 914-342-7744 로 "food," "summer," "meals" 등과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질문을 보내시면 주소 및/또는 우편번호 기준으로 근처에 위치한 리소스에 대한 자동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면 통지는 귀하가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러한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본 통지는 가능한 가장 빠른 기회에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